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77
----------	-------

발의연월일 : 2026. 5. 28.

발 의 자 : 임종득·서천호·임이자  
김성원·김상훈·윤상현  
김승수·성일중·강명구  
이달희·박덕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치 시공자에게 5년 이내에서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 등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영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노후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노후 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된 태양에너지·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 및 발전효율을 높이고

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신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 ① 시행기관의 장은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기관의 장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자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의6(노후설비 교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된 태양에너지·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 및 발전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p> <p><u>&lt;신 설&gt;</u></p>	<p>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p> <p><u>제30조의5(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 ① 시행기관의 장은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기관의 장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자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u>제30조의6(노후설비 교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된</u></p>
<p><u>&lt;신 설&gt;</u></p>	<p><u>제30조의6(노후설비 교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된</u></p>

태양에너지 ·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 및 발전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